

ESG/전략위원회규정

2022. 4. 21.

SK 바이오팜 주식회사

제 정: 2021. 4. 21.
개 정: 2022. 4. 21.

제 1 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ESG/전략위원회(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/전략위원회, 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기능)

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기구로서, 환경(Environment) · 사회적 가치(Social Value) · 회사의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·분석하여,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 중 일부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.

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1 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 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또는 토의한 사항의 결과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

위원이 주재한다.

제 5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최초 위원회는 이사회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3 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.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(결의 및 검토 사항)

- ① 위원회는 다음 전략 및 경영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각호와 같이 심의하여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에 검토한다.
 1. 결의 사항: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및 연간 목표(KPI)의 수립 및 평가, 회사의 ESG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
 2. 사전검토 사항: 회사의 중장기 전략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투자 및 기획관리 관련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에 검토한다.
 1. 자회사(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%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)의 설립, 합병, 분할, 해산, 주권 상장 및 코스닥 상장
 2.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

처분

3.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4. 회사의 합병/분할/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
5.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
6.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
7.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산의 취득

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재무 관련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에 검토한다.

1. 중간배당, 주식배당
2. 신주의 발행
3. 준비금의 자본전입
4. 정관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특정한 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5.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6. 자본감소
7. 자기주식의 소각
8. 주식의 액면 분할 및 병합
9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
10.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주식의 포괄적 이전
11.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이익참가 부사채,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결정
12. 회사주요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. 단, 회사 주요 자산이라 함은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.
13. 10 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기부. 단, 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 제공과 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”에 따른 기부는 대표이사가 선집행 후 위원회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.
14.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(단, 1년 이내의 단기차입은 제외) 및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

④ 위원회는 기타 이사회 결의사항 중 회사의 전략,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.

제 8 조 (토의 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.

1. 회사의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
2. 회사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
3. 기타 회사의 전략,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

제 9 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 및/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간사 조직)

- ① 위원회의 간사 조직은 전략본부로 한다.
- ② 간사 조직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간사 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 작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21. 4. 21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21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 4. 21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22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